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등 포함〉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3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등 포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4. 10. 30.
3. 회 부 일: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사무를 감독·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등 포함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u>제9호까지</u> 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 ----- ----- ----- ----- ----- <u>--제10호까지</u> 에-----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필요’, ‘범죄 수사’, ‘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¹⁾.

□ 한편, 국회가 국회관계법²⁾에 따라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하 생략)

2)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

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³⁾.

< 국회관계법 상 서류 제출 요구 관련 규정 >

법률명	규 정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3) 예: 2021년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 인사청문 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규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2. 12. 28.).

법률명	규정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이에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내실화함으로써 국회의 안전심의 및 국정통제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며,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등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명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

에 따라서도 국회관계법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에 따른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음⁴⁾.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사유(법 제18조제2항 각 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한편, 현행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제18조제2항 전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⁵⁾하므로, 개정안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9. 9. 제2019-17-272호 결정, 2024. 3. 27. 제2024-106-009호 결정 등 다수

과 같이 제18조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관계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⁶⁾,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 둘째, 현행법 제18조제2항제2호는 각 국회관계법이 요구하는 절

- 5) 정부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2호).
6) 국회관계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2020. 2. 24. 제2020-04-050호 결정) 인사청문 대상자 자녀의 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진단서(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 삭제)를 국회에 제공할 수 없음 → 제3자의 민감정보
- (2019. 9. 9. 제2019-17-272호 결정) 소방청은 119신고접수정보와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음 →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주체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큼
- (2018. 10. 1. 제2018-20-233호 결정)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에 세부·단위사업의 담당 직원의 성명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음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

- 7) 참고로, 국회관계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국회관계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합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6)이 지난 2024. 11. 28.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가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나 전체 법질서를 관통하는 기본권 보장체계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2025. 1. 8.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음.

- 의안번호 제2203425,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 서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를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의안번호 제2201459,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

차(의결 정족수 등)에 따라 요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반면, 개정안은 국회 관계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은 각 국회관계법이 자료제출 요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회관계법에 따른 서류 제출 관련 규정 >

구분	국회법	국감국조법	증언감정법	인사청문회법
제출 요구자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반	국회 (본회의, 위원회)	위원회
제출 의무자	정부, 행정기관 등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기관
요구 절차	의결 또는 재적1/3	의결 또는 재적1/3	의장, 위원장 (의결)	의결 또는 재적1/3
제출 기한	10일 이내 (연장 가능)	-	-	5일 이내
제출 자료	서류등(서류, 사진·영상물)	서류등(서류, 사진·영상물)	서류등(서류, 사진·영상물)	자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내실화하려는 취지와 함께, 현행법 제18조제2항제2호와의 관계, 개정 취지의 달성 가능성 및 국회관계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